2.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7월 10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7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7월 23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협의·자문을 하기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간사는 혁신도시 전담부서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제정 조례안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 지구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었음.

► 2018년 8월 현 정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4]'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대구혁신도시에도 정주 인프라와 창업지원 공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

► 한편,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따른 2019년 성과를 보면,

지역인재 채용실적의 경우 부산이 35.7%로 가장 높고 대구는 28.7%로 전체 혁신도시 중 2위를 차지하였지만,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217억원·4.2%, 지방세 납부 330억원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4) **혁신도시 시즌 2** : 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법 제29조의4의 규정대로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정보 협의·자문 등 협의체의 기능과 대구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5]과 제5조제4항[6]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대로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회의의 소집과 개의 및 의결의 요건 등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 청취, 간사 선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비 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협의체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였음.

---

5) **제3조(적용대상)**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6) **제5조(구성 등)**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7.10.24.자 개정된 법 제29조의2제1항[7]에서 "이전공공기관 장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여 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었던 만큼, 조례의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행히,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타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대구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기여도 향상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7) **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참고 1 혁신도시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단위 : 개, 명, %)

이전 지역	기관수	2018년도						2019년도						대학수	졸업생수	전국 대비 비율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	지역인재의무채용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	지역인재의무채용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			(%)
합계	**109**	**14,338**	**2,011**	**14.0**	**6,076**	**1,423**	**23.4**	**13,536**	**2,086**	**15.4**	**5,886**	**1,527**	**25.9**	**240**	**281,295**	**52.9%**
부산	11	666	211	31.7	511	164	32.1	575	187	32.4	431	154	**35.7**	25	43,787	8.2%
대구	9	655	171	26.1	512	142	27.7	687	169	24.5	426	122	**28.7**	13	25,047	4.7%
광주·전남	13	3,181	485	15.2	1,698	359	21.1	3,166	549	17.3	1,611	396	**24.6**	40	36,199	6.8%
울산	7	2,055	143	6.9	492	117	23.8	1,126	115	10.2	371	101	**27.2**	5	6,458	1.2%
강원	11	2,892	295	10.2	497	145	29.1	3,208	295	9.2	650	166	**25.5**	24	21,240	4.0%
충북	10	296	44	14.7	151	32	21.2	448	89	19.8	212	58	**27.4**	19	22,906	4.3%
전북	6	1,208	164	13.6	610	119	19.5	1,024	154	15.1	400	102	**25.5**	21	22,318	4.2%
경북	8	1,019	207	20.3	613	144	23.5	1,052	232	22.1	711	184	**25.8**	35	37,248	7.0%
경남	10	1,437	221	15.3	816	165	20.2	1,487	226	15.2	822	185	**22.5**	23	22,379	4.2%
제주	3	93	12	13.0	31	6	19.4	64	6	9.4	23	5	**21.7**	5	4,629	0.9%
충남	2	308	43	14.0	146	32	21.9	358	65	18.0	230	55	**23.9**	26	34,775	6.5%
세종	19	531	17	3.2	0	0	-	342	1	0.3	0	0	-	4	4,307	0.8%

① **전체채용인원** : 임원, 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인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② **지역채용인원** : 채용인원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인원

③ **지역인재의무화 채용인원** :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예외를 제외한 인원 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

※ 출처 : 2002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참고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도

≪ 혁신도시별 지역물품 우선구매 현황 ≫

(기준 : 2019년 말)

혁신도시	지역물품구매(억원, %)		혁신도시	지역물품구매액(억원)	
	구매금액	우선구매율		구매금액	우선구매율
부 산	614	16.2%	충 북	99	5.31%
대 구	217	4.2%	전 북	838	30.2%
광주·전남	6,936	16.5%	경 북	108	3.12%
울 산	581	7.6%	경 남	1,132	19.8%
강 원	1,016	16.9%	제 주	23	4.9%

* 총 구매비용 13조 7,679억 원 중 지역물품 1조 2,167억 원 구매(개별이전기관 포함)

※ 출처 : 2002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현황 ≫

(기준 : 2019년 말)

혁신도시	지방세수(억원)	혁신도시	지방세수(억원)
부 산	906	충 북	279
대 구	330	전 북	272
광주·전남	483	경 북	288
울 산	293	경 남	717
강 원	570	제 주	91

※ 출처 : 2002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참고 3 타 시·도(혁신도시)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자	비고
1	부 산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2018.05.16.	
2	광주·전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03.15.	
3	전 북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2018.08.10.	
4	경 북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2018.11.01.	
5	경 남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2018.05.03.	
6	충 북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2018.12.28.	
7	울 산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12.26.	

※ 미제정 : 제주, 강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 지연 사유는?	○ 대구시는 이전기관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채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러나 상위법에서 혁신도시별로 반드시 지역인채채용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지역인재채용 관련 문제점과 연계한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심의자문기구인 만큼 협의체 구성 후 지적하신 지역인재채용 문제점이 협의체 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지역인재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